

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6. 9.
기획·행정·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김기열 의원 등 5명(배용식, 안영란, 원종진, 조복희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9.)

2. 제안이유

-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96개 위원회의 필수적 규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는 ‘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“위원회”의 정의와 “적용대상”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위원회”에 대한 정확한 범위 정의(안 제2조)
- “당연직 위원”, “위촉직 위원”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“관계 법령”에서 “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”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(안 제3조)
- 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, 제116조의2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위원회의 정의, 적용 대상, 구성, 제척·기피·회피, 준수사항 등 조문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·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안 제2조 당연직·위촉직 위원 정의의 경우 현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, 안 제6조제6항으로 추가된 위원 임기에 대한 단서는 필요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함이 타당하고, 안 제6조 제7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안 제6조제6항으로 추가된 임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「정부위원회 설치·운영 세부 지침」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권유한 정부위원회 설치·운영 세부지침을 존중하여 해당 조문 개정안은 수정에 동의함.

- 정의 부분과 당연직 임기 재직기간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삭제 검토의 견은 조례를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음.
- 각종 위원회 위촉시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와 의견을 가진 많은 달서구민들이 여러 관심분야의 위원이 되거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⑤ ^(생략)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</u> <u>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</u> <u>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⑤ ^(개정안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